

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100
----------	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주민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, 주민자치회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(안 제2조·제3조)

나. 위원 수를 확대함(안 제5조)

1) 20명 이상 30명 이하 ⇒ 20명 이상 50명 이하

다. 위원 자격을 정함(안 제6조)

라.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을 위촉함(안 제7조제2항)

마. 위원 자치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함(안 제6조제3항, 제9조, 제13조)

1) 주민자치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

2) 사익추구 금지 등 해촉 사유 강화

3) 외부 감사 선임

바.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신설함(안 제15조, 제16조)

사.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(안 제18조, 제20조)

1)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

2)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보험 가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~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 41,720천원 확보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7. 25.~8. 14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)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

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

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읍·면(이하 “읍면”이라 한다)에 ○○읍면 주민자치회(이하 “주민자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5조에 따른 주민총회 운영
2.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

제4조(운영원칙)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

1. 주민의 복리 증진
2.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
3. 지방자치 활성화
4. 주민 참여 보장

5. 자율적인 운영
6. 정치적 중립 유지

제5조(주민자치회의의 구성)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장(이하 “자치회장”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(이하 “자치부회장”이라 한다)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호선한다.

제6조(위원의 자격) ①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실시하는 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
2. 읍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
3. 읍면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군의회 의원

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,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위촉)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공개모집 계획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.

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: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

2.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사업장,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: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
3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: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
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별로 예비위원을 5명 이내로 함께 위촉해야 한다.
- ④ 군수는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해당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.
- ⑤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②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1.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2.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
3.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
4. 제11조를 위반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

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군수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0조(자치회장의 직무)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,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

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2조(위원의 대우)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감사)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. 다만,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.

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4조(회의)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: 월 1회

2. 임시회의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나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
-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5조(주민총회)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.

- ② 주민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주민자치회의 운영
 - 2.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안
 - 3.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
 - 4. 그 밖에 지역 현안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- ④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.
 - 1. 정기회의: 연 1회 이상
 - 2. 임시회의: 주민자치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⑤ 주민총회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1개월 전까지 심의 안건 등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.
-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결 결과 및 회

의록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.

제16조(자치계획의 수립 등)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치계획(이하 “자치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

1.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
 2. 마을 발전 및 활성화
 3. 그 밖에 주민참여에 관하여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.
-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제출받은 군수는 자치계획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, 그 검토결과를 자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에 알려야 한다.
-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,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17조(분과위원회)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자치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.

제18조(운영 지원)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,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

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교육) 군수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제20조(보험 가입)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21조(간사 등)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된다.

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제12조 위원의 대우

나. 제15조 주민총회

다. 제18조 운영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 예상
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1) 2019년도 예산 : 위원 수당 41,720천원

3. 미첨부 사유

가. 주민자치회 총회 개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
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

4. 작성자

행정과장 곽 승 욱